

## 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회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증개정) 조례안

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회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증개정)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 
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검사위원 5인 중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을 제외한 4명의 위원은 도의회  
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.

동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 제2항, 제3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별 표 제2호 중 일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일	비	50,000 원
---	---	----------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 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
제3조 ( 선임방법 및 절차 )	제3조 ( 선임방법 및 절차 )								
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	① 검사위원 5인중 당해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.								
② 생 략	② 삭 제								
③ 생 략	③ 삭 제								
④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	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								
⑤ 생 략	⑤ 생 략								
( 별표 제2호 )	( 별표 제2호 )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일 비</td> <td>20,000 원</td> </tr> <tr> <td>여 비</td> <td>생 략</td> </tr> </table>	일 비	20,000 원	여 비	생 략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일 비</td> <td>50,000 원</td> </tr> <tr> <td>여 비</td> <td>현행과 같음</td> </tr> </table>	일 비	50,000 원	여 비	현행과 같음
일 비	20,000 원								
여 비	생 략								
일 비	50,000 원								
여 비	현행과 같음								